



대 법 원
제 3 부
판 결

사 건
원고, 상고인

2023두57074 보험급여 지급결정 처분취소

[Redacted] (생)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변호사 [Redacted]

피고, 피상고인

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원 심 판 결

서울고등법원 2023. 10. 20. 선고 2021누59610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잔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이 유

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24. 2. 2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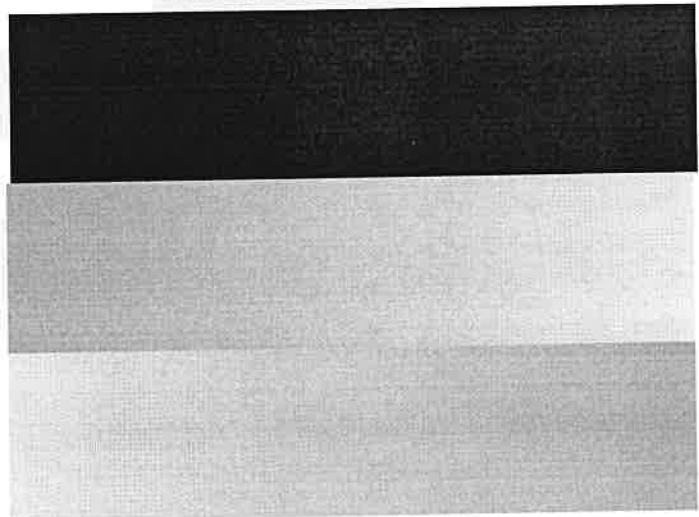
재판장

대법관

대법관

주심

대법관

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정본입니다.

2024. 2. 20.

대법원

법원사무관

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